의안번호	2214921
의 뢰 인	김정재의원
회 답 일	2026.1.26.
추계번호	25D6680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 (군구조의 개선)	국방부, 합동참모본부, 육군・해군・공군본부・해병대사령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・발전시켜야 함(제1항)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・발전시키고,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함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・해군・공군・해병대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25조 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	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, 육군・해군・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3조(군구조의 개선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5조 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	

2. 상세사유

❑ 개정안은 기존의 육군・해군・공군본부 등 3군 체제에서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 4군 체제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 및 조직을 개선·발전시켜야 하며, 합동작전능력 및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

을 개발·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현재 군의 합동작전은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합동전투 발전업무 훈령」에 의해 규정·관리되고 있음

❑ 개정안에 따라 4군 체제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개선·발전을 위한 해병대 조직개편, 합동군사 교육체계 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

○ 또한, 개정안에 따라 상비병력을 육군・해군・공군·해병대 등 4군 체제에서 구성비율이 변동할 경우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

❑ 다만, 개정안에 따라 해병대를 해군과 독립하여 4군 체제로 개편 시 해병대 조직 개편 및 합동군사 교육체계 개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❑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